

양육비 선지급제 시행!

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합니다.

※ 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에 따라,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(비양육부·모)에게 회수하는 '양육비 선지급제' 시행 (2025. 7. 1.)

월 20만원, 만 18세까지

지원 대상 및 요건

-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**만 18세 이하인 자녀**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
- 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**직전 3개월 동안** 양육비 채무자가 **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**
※ 양육비 채무 전부를 이행한 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
- ☑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**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**
- ☑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

지원 내용

- 자녀 1인당 월 20만원
※ 단, 지급액은 집행권원(양육비부담조서, 판결문 등)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

신청 방법

- (온라인)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www.childsupport.or.kr)
- (우 편)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(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) 24층(우 04554)
※ 우편접수시 '선지급 담당자앞' 기재 요망

문의

- (전 화) 1644-6621 (평일 9시 ~ 18시)
- (온라인)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→ 소통·참여 → 온라인 상담

뒷면의 체크리스트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~!



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 체크리스트

양육비 선지급제 요건



1.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신가요?
* 미성년자녀(2026년 기준): 2007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녀(만 18세 이하)
2.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동안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가요?
3.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가요?
* 기준 중위소득 150%(2026년 기준): (예)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29,357원 이하
4.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인가요?

위 1.~ 4. 기준에 모두 충족시,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


필수서류

- 1 신청서 및 동의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, 개인정보 제3자 제공, 행정정보공동이용) 1부
*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- 2 집행권원 일체
-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, 조정조서, 판결문 및 송달·확정 관련서류
-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
-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
-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
- 양육비 직접지급명령, 이행명령,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'나의 사건 검색' 조회 내용
- 5 통장사본(선지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)
- 6 기본증명서(신청인 1부, 자녀 각 1부)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 1부, 자녀 각 1부), 혼인관계증명서(신청인 1부)
*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추가자료를 보완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지원절차

